

## 明細書作成要領이 成敗가능

甘 東 勳

<特許廳 審判官>

**特許制度의** 本質이 特許를 받은 發明者에게는 一定期間 그 特許에 대한 獨點權을 부여하지만 그 대身에 特許發明의 技術內容을 公開하고 또 그 發明을 實施하여 公衆에게 發明利用의 길을 提供하는 義務를 부과시킬 뿐만 아니라 公衆에게는 發明利用의 機會를 부여해 주는 反面, 一定期間 特許發明을 模倣하여 實施하지 않을 義務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特許制度는 發明과 公衆의 利害를 잘 調整하여 結局에는 全體의 產業의 發達과 公共의 利益을 圖謀하는 것이 되는바 따라서 發明者와 一般公衆은 이려한 特許制度가 가진 意義를 充分히 理解하여 權利와 義務를 履行해야 할 것이다.

發明者는 그 發明에 대하여 特許를 받고자하면 特許法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特許廳長에게 出願書를 提出하여 약하며 提出된 出願明細書는 審判官이 審查하여야 함은勿論이다. 出願人이 出願할 때에는 여리가지 理由가 있겠으나 그 主는 特許를 받기 위한 出願일 것인바 이와 같은 目的達成을 위한 明細書의 作成을 如何히 하여 審查의 關門을 無事히 通過하여 無效의 要因이 없도록 할 것이냐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特許審査는** 書面에 의하여 實施하고 判斷하는 것 이므로 아무리 훌륭한 發明을 하였어도 出願明細書의 記載가 不備할 때에는 特許의 許與가 곤란한 것은 自明한 일인바 出願人은 明細書作成要領에 依據作成하되 特許請求의範圍는 發明이 保護되는範圍이며 또한 特許權으로서 主張할 수 있는 權利의範圍이므로 請求範圍記載如何는 매우 重要하다.

例를 들면 發明의 詳細한 說明項에는 發明構成의 必須要件이 詳細하게 記載되어 있더라도 特許請求의範圍에 記載되어 있지 않으면 그 部분의 發明에 대하여는 特許權으로서 保護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알려진 技術까지도 포함되는 廣範圍한 記載나 詳細한 說明에 記載하지 않은 部分을 記載하였을 때에는 審查過程에서 拒絕되는 原因이 되는 것이

다. 그러므로 發明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必須要件을 全部 記載하는 것이 매우 重要한 것이다. 特許請求의範圍記載要領은 獨立請求範圍와 從屬請求範圍를 併記하는 多項制도 있으나 여기서는 省略하기로하고, 여하간 出願된 發明은 審查過程에서 拒絕할 理由가 發見되면 出願人에게 拒絕理由의 通知를 하게 되며 이것을 받은 出願人은 그 拒絕理由에 대하여 誠實히 意見書등을 提出하여 拒絕理由를 전복할 수 있는 充分한 反論을 提示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反論은 먼저 왜 拒絕되었는가를 알기 위하여 拒絕理由의 内容을 具體의 으로 檢討해 볼 必要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勿論 現行法上 拒絕해야 할 出願에 대하여 具體의 明示規定은 없으나(特許廳審查便覽에는 規定되어 있음) 適用되고 있는 條文에 의거, 實施되는 拒絕理由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다음 몇 가지의 拒絕理由通知書가 왔을 때 어떻게 對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例 1>

“…國內外에서 반포된 刊行物에 記載된 것에 의하여 그 發明이 속하는 技術分野에서 通常의 知識을 가진 者이면 容易하게 發明할 수 있는 것이라고 認定됨으로 特許法第 6 條 2 項에 해당되어 特許를 받을 수는……”

### <例 2>

“이 出願明細書 또는 圖面에는 아래에 指摘된 바와 같이 그 發明의 目的, 構成效果가 그 發明에 속하는 技術分野에서 通常의 知識을 가진자가 容易하게 實施할 수 있을 程度로 記載되어 있지 아니하여 特許法第 8 條 및 同法施行令 第 1 條 4 項의 規定에 의한 要件을 충족치 못한 것으로 認定됨.”

### <例 3>

“이 出願은 그 出願前에 出願되어 先公告된 아래 發明과 同一하므로 特許法第 11 條第 1 項의 規定…”

以上 3가지의 例가 지니는 意味를 살펴보면 「例1」의 경위; ①『明細書의 詳細한 說明 및 特許請求의範圍가 너무 廣範圍하게 記載되어 公知公用된 部分

## 請求範圍의擴散은先行技術에抵觸危險



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廣範圍한 特許請求의範圍로서는 拒絕理由의 參證發明으로 拒絕되게 되는바 拒絕을 받지 않으려면 參證과 잘 比較하여 特許請求의範圍를 좁게 써주십시오』라는 뜻의信號라고 生覺할수 있으며 ② 또 다른 뜻은『이出願은 拒絕理由參證으로부터 이分野에 通常의知識을 가진者이면 容易하게 發明할수 있는 進步性이 없는 것이라고 認定되는 것이므로 拒絕합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할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出願人은 이들의 拒絕理由에 對處하기 위하여는

**먼저出願한自己發明과拒絶參證의內容中 어느部分과가 서로同一類似한지를慎重히比較檢討하여 上記①에該當된다고判斷될경우에는明細書의詳細한說明中發明의目的이나先行技術등을明確히밝히고特許請求의範圍를減縮한補正書와意見書를 함께指定期間內에提出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補正書의內容이出願當時의發明內容과 다른要旨變更이되어서는안된다. ②에該當된경우에도一應補正書와意見書를提出할必要가있으며 경우에따라서는明細書作成者の表現未備등의原因으로審查過程에서判斷의誤差가생길수도있으므로補正書나意見書提出을포기할必要的는없다고생각한다.**

<例2>의 경우; ①「目的達成을 위한技術的構成이具體적으로記載되어 있지 않음으로써發明의要旨를把握하기 곤란하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②「發明이一應構成되어 있는 하지만明細書의作成要件에適合하지 않아發明의必須要件이特許請求의範圍에記載되어 있지 않을 경우」③「明細書의記載가明細書作成要領에 맞추어發明의目的,發明의構成作用 및 이로因한效果와發明의必須要件을記載한特許請求의範圍 및作圖法에의한圖面등의記載內容이산만할뿐만아니라그로인하여그分野에서通常의knowledge를가진者가容易하게發明의要旨를把握하고理解하기곤란한程度로記載되어 있다」는 뜻으로도解釋할수 있으며 ④「明細書의記載內容으로는技術의으로不合理하여發明을 實施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

다. 그러므로出願人은拒絶理由에指摘된事項이 어떤意味가내포되어있는지를 면밀히檢討하여 그點에 알맞은補正書와意見書를提出하여야 할 것이다.

<例2>의 경우; 이 경우에 있어서 本發明은 原來는 이와 같은拒絶理由通知를 받지 않는 特許發明이였지만 우리나라 特許法은 先出願優先主義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本發明과 同一한發明이 이미先出願되어 있어 特許되지 않는 것이다. 이拒絶理由는 2가지의意味를 가지고 있다.

① 「特許請求의範圍가廣範圍하기 때문에發明의一部가先出願公告된發明에저촉된다」는 뜻이내포되어있으며 ② 「拒絶理由의例文과같이先出願公告된發明이同一한發明이다」라는意味를나타내는경우이다. 그러므로 ①의 경우에 있어서는「이내로特許請求의範圍에記載된發明으로서는그一部를除外하고는先出願公告된發明과同一한以上拒絶할수밖에없으니先出願公告된發明이포함되지않도록特許請求의範圍를減縮하여야한다」는意味로볼수 있으며 ②의 경우에는例文과같이똑같은것은그다지많지않으나類似한경우는적지않으므로「될수있는한技術의手段등을限定시킨特許請求의範圍로限定하되單純한均等手段이나均等物등인경우에는拒絶한다」라는것으로解釋할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이拒絶理由通知書에記載되지않은意味가많이포함되어있음을고려하여明細書를作成할때에는發明의目的및先行技術을具體의이고明確하게記述하여發明의技術範圍가上位概念에서判斷되는일이없도록할것이며審查過程에서는先行技術과出願發明을對比判斷함에있어兩發明技術內容中同一하거나類似한點만을對比判斷할것이아니라서로다른점이어디에있으며技術思想과發明의目的이어디에있고어떻게다른가의如否를判斷하여야 할것이다. 保護받아야할새로운기술이出願明細書의記載不備로빛을보지못하고사장되는안타까운不幸이發生하지않도록出願人이나審查官모두가努力하여야할것이라고생각된다. &